

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6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본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사회교육시설인 미술관, 박물관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도 구세인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정보유통의 효율화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도서관진흥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면제함.

3. 관 계 법 령 : 지방세법 제7조